Eunpyeong-Gu

Ⅲ

의료급여사업

37 의료급여제도
38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현황
39 의료급여 지원
4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지원
4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
42 암환자 의료비 지원



북한산 큰 숲, 내일을 여는 은평

37 의료급여제도

• 생활복지과 의료급여팀 ☏351-7075~9

구 분	내 용
지원목적	○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(질병, 부상, 출산 등)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
지원대상 (의료급여 수급권자)	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: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, 2종 구분 ○ 행려환자 ○ 기타(타법적용자) – 국가유공자,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, 5.18 민주화운동 관련자 – 북한이탈주민, 이재민, 의사상자, 입양아동, 노숙인
의료급여 이용절차	○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**1차** 의원 / 보건기관 (보건소,보건지소 보건진료소), 보건의료원 ⇄ (의료급여의뢰서 / 의료급여회송서) **2차** 병원, 종합병원 ⇄ (의료급여의뢰서 / 의료급여회송서) **3차** 상급종합병원 (지정 42개) (지정기간 : 2022.12.31.까지) –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, 상위 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※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(의료급여 의뢰서 없이)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
의료급여 일수연장	○ 사업내용 : 연간 365일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, 사전 연장승인으로 약물남용 및 의료쇼핑 등의 사전 예방 유도 ○ 연간 상한일수 및 연장 승인 기준

심의분류	심의대상기준				비 고
	질환군	상한일수	연장승인 일 수	연장신청 가능횟수	
승 인	고시질환	380일	75일	1회	연장승인일수 초과 시 조건부 승인 (선택 병 · 의원) 으로 변경
	희귀 · 중증난치 질환,중증암	365일	90일	1회	
	기타 질환	400일	90일	2회(145일) (1회 90일 + 2회 55일)	
조건부 승 인 (선택병원제)	11개 고시질환	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한 자			본인이 선택한 1 ~ 2개 병 · 의원 이용 조건
	희귀 · 중증난치 질환,중증암	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한 자			
	기타질환	고시질환 또는 희귀질환 외의 기타 질환들로 급여일수가 545일 초과한 자			

○ 연장승인 절차
① 상한일수 초과한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독촉장 발부(보장기관)
상한일수 초과 전, 독촉장 도달 후 14일 이내 연장승인 신청(수급자)
② 의료급여일수 확인,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연장 여부 심의
③ 결정 후 14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

38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현황

• 생활복지과 의료급여팀 ☏351-7073

종별(유형)		선정기준	비 고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1종	· 근로무능력 가구 · 중증질환자, 희귀 · 중증난치성 질환자(결핵포함)	※ 수급자 1종 근로무능력대상자 기준 ① 18세미만 65세 이상 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③ 질병 · 부상 ·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 평가결과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④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⑤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 ⑥ 기초수급자 선정 3년 이내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 ⑦ 20세미만의 중, 고교 재학생 ⑧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해당자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자 ⑩ 타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(가구별 1인에 한함) ※ 시설수급자, 타법적용자, 행려환자등 → 모두 의료급여 1종 지원 ※ 수급자 2종 근로능력 있는 자 ①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 ※ 입양대상 아동(1종) ※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: 2종 지원(단 입원시 급여비용 14%)
	2종	· 1종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수급자 가구	
	시설수급자	· 보장시설입소자	
타법적용자 (1종)	입양아동	「입양특례법」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18세미만 아동	
	국가유공자	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장 추천 · 소득인정액 기준 이원화 – 일반가구 중위소득 80%, – 취약가구 중위소득 100% ※ 취약가구기준 : 18세미만, 65세 이상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상이등급 1-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	
	5.18 민주화 운동 관련자	「5.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	
	국가무형 문화재보유자	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, 문화재청장 추천 중위소득 60%이하	
	북한이탈자	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중위소득 50%(취업특례160%)	
	이재민, 의사상자	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이재민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1~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	
	행려환자	일정거소 및 부양의무자가 없고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(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제1호)	
	노숙인, 무호적자, 기타	개별지침 기준에 따라 결정 (입양대상 아동 포함)	

구 분		진료비 본인부담금	
		1종	2종
외래	· 의원	1,000원	1,000원
	· 병원	1,500원	15%
	· 3차의료기관 (대형병원)	2,000원	15%
	· 약국 (처방조제)	500원	500원
입원	· 급여비용	전액무료	10%
	· 식대	20%	20%
기타	· 건강생활 유지비	월 6천원	0

39 의료급여 지원

• 생활복지과 의료급여팀 ☏351-7072~4

구 분		1종	2종
진료비 본인부담	외래	○ 의 원 : 1,000원 ○ 병원 · 종합병원 : 1,500원 ○ 3차의료기관(대형병원) : 2,000원 ○ 약 국 : 500원	○ 의 원 : 1,000원 ○ 병원 · 종합병원, 3차의료기관 (42개 대형병원) : 급여비용 15% ○ 약 국 : 500원
	입 원	○ 급여비용 전액 무료 (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) ○ 식대의 20% 본인 부담	○ 급여비용 10% 본인부담 (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) ○ 식대의 20% 본인 부담
본인부담 면제자		○ 당연적용 : 18세미만인 자, 행려환자, 등록결핵질환자, 등록 중증질환자,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○ 신청에 의한 적용 : 20세 이하 재학자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	해당 없음 ※ 예외 : 2종 본인부담금특례 – 산모입원, 6세미만 아동입원,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· 심장질환자 (권역외상 센터입원 최대30일) : 본인부담 없음
건강생활 유지비 지원		○ 1인당 매월 6천원씩 적립(가상계좌) ○ 병 · 의원 외래진료 시 차감됨 ○ 남은 금액은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해 본인 계좌로 지급 ○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제외	해당 없음
요양비 지원		○ 질병 · 부상 · 출산 요양비 : 의료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○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– 복막관류액 :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액 범위 내 실구입가 지급 –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(백, 관 등) : 1일 10,420원 ○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: 1형당뇨 1일 2,500원(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0,000원/일), 2형당뇨 1일 900원 ~ 2,500원 ○ 당뇨병 관리기기(1형당뇨) : 연속혈당측정기 210,000원/3개월, 인슐린자동주입기 1,700,000원/개 ○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: 1일 9천원/인(1일당 최대 6개 이내) ○ 산소치료 : 가정용 120,000원/월, 휴대용 200,000원/월 ○ 인공 호흡기 : 대여료 535,000원/월	
장애인 보조기기 지원		○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시 유형별 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100% 지급	
		○ 장애인보조기기 유형(총 54종) – 팔의지(8종), 다리의지(7종), 팔보조기(4종) – 척추보조기(5종), 골반보조기(1종), 다리보조기(4종) – 기타 보조기(지팡이, 목발, 수동휠체어, 저시력보조안경, 콘텍트렌즈, 돋보기, 의안, 망원경, 흰지팡이, 보청기, 체외용 인공후두, 맞춤형교정용 신발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, 자세보조용구)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식 전동 리프트, 전/후방 보행차 등 ○ 내구연한(1년 ~ 6년까지 차등적용) 및 기준금액 이내 1인당 1회 지원	
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지원		○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(2022년 16,440원) 이하인 가구로 만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모부자가정, 국가유공자, 차상위계층,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: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에 따라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보험료 지원	
노인틀니 (임플란트)		○ 대상 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틀니(임플란트) 대상자로 진단받아 등록신청서를 사전 제출한 자 ○ 7년 주기로 1회 적용, 중복급여 금지(틀니), 1인당 평생 2개 지원(임플란트)	

노인틀니	1종	본인부담률 : 5%(1종)	2종	본인부담률 : 15%(2종)
임플란트		본인부담률 : 10%(1종)		본인부담률 : 20%(2종)

40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지원

- 〈총괄〉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- 〈조사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☎351-7021~35
- 〈변동〉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☎351-7091~9

구 분			내 용
지원대상			○ 개인단위급여 : 희귀난치성 · 중증질환자, 만성질환자, 18세미만인 자
선정기준			○ 소득인정액기준(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) (단위 : 원) 가구규모 / 1인 / 2인 / 3인 / 4인 / 5인 / 6인 / 7인 선정기준 / 972,406 / 1,630,043 / 2,097,351 / 2,560,540 / 3,012,258 / 3,453,502 / 3,890,296 * 소득 및 재산의 범위, 조사방법 등은 『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안내』의 선정기준 적용
조사범위	소득인정액		○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*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–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– 근로소득공제실제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임대소득, 공적이전 등) *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× 소득환산율
	재산	기본재산 및환산율	○ 기본재산액 : 13,500만원 ○ 소득환산율 : 주거용재산(월) 1.04%, 일반재산 4.17%, 금융재산 6.26%, 자동차 100%
		일반재산	○ 대상 : 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 · 공채 등 유가증권, 예금, 적금, 부금, 보험 및 수익증권 등 *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: 2,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
		자 동 차	○ 대상 :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
		부 채	○ 대상 :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, 금융기관 외 기관대출금 등 차용액 중 미상환액 ○ 부채의 인정범위, 조사방법, 차감순서 등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
	부양의무자		○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○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: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(부양비 미적용) ○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 ※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기준 (단위 : 원/월)

구 분		부양의무자 가구원 수					
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수급자수	1인(120%)	2,333,774	3,912,102	5,033,641	6,145,296	7,229,418	8,288,405
	2인(130%)	2,528,256	4,238,111	5,453,111	6,657,404	7,831,870	8,979,105
	3인(140%)	2,722,737	4,564,119	5,872,581	7,169,512	8,434,321	9,669,806
	4인(150%)	2,917,218	4,890,128	6,292,052	7,681,620	9,036,773	10,360,506

조사범위	확인조사	○ 희귀난치성 · 중증질환 : 자격종료일 전(차상위 해제일 전일)까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재등록(연장)하여야 함. ○ 만성질환 :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되, 만성질환자 인정 또는 확인조사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진단서를 제출받아야함. ○ 18세 미만 아동 : 질환 유 · 무와 관계없음
지원절차		신청서류 제출 및 초기상담(동 주민센터) ⇒ 서류 접수 및 조사(복지정책과) ⇒ 보장결정, 통지, 급여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)
지원내역	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	○ 희귀난치성 · 중증질환자 – 입원외래 : 요양급여비용 면제, 기본식대의 20% – 65세이상 노인 틀니 : 요양급여비용의 5% –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: 요양급여비용의 10% – 추나요법 : 요양급여비용의 30% ○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 – 입원 : 요양급여비용의 14%, 기본식대의 20% – 외래 : 요양급여비용의 14%(정액 1,000원, 1,500원) – 65세이상 노인틀니 : 요양급여비용의 15% –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: 요양급여비용의 20% – 추나요법 : 요양급여비용의 40% – 심 · 뇌혈관질환자 : 요양급여비용 면제(입원수술시30일), 기본식대의 20% ※ 요양급여비용이란 의료비 중 급여비용(비급여항목 제외)
	② 건강보험료지원	○ 건강보험료 지원 :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

4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

•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☏351-8243

구 분	내 용
지원대상	○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(1,147개 대상질환)

선정기준

소득기준

(단위 : 원/월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 중위소득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
일반기준(120%)	2,333,774	3,912,102	5,033,641	6,145,296	7,229,418
혈우병 · 고쉐병 · 패브리병 · 뮤코다당증(160%)	3,111,699	5,216,136	6,711,522	8,193,728	9,639,224

재산기준

(단위 : 원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
일반기준	217,965,813	255,815,396	282,710,820	309,369,209	335,367,338
혈우병 · 고쉐병 · 패브리병 · 뮤코다당증	726,552,710	852,717,986	942,369,400	1,031,230,695	1,117,891,127

※ 2인 환자 등록 가구인 경우 추가 1인당 일반기준(소득, 재산)에 150% 가산 적용

부양의무자

○ 신청자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 등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
○ (개정)부양의무자 기준: 출가한 딸(사위포함), 기혼여성(환자) 친정부모
○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

(단위 : 원/월)

가구 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 중위소득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
일반기준(200%)	3,899,624	6,520,170	8,389,402	10,242,160	12,049,030
혈우병 · 고쉐병 · 패브리병 · 뮤코다당증(240%)	4,667,549	7,824,204	10,067,282	12,290,590	14,458,836

○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 일람표(대도시기준)

(단위 : 원)

가구 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
일반기준	363,276,355	426,358,993	471,184,700	515,615,348	558,945,564
혈우병 · 고쉐병 · 패브리병 · 뮤코다당증	871,863,252	1,023,261,583	1,130,843,281	1,237,476,835	1,341,469,353

지원내용

○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
○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: 근육병 등 103개 대상질환
○ 간병비(월30만원) : 97개 대상질환 중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(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)
○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: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대상질환

구 분		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	건강보험가입자			
			소득 ·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		소득 ·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	
지원대상		지정된 대상 질환	1,147개 대상질환	지정된 대상 질환	혈우병환자 중 해당자	지정된 대상 질환
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	진료비	·	○	·	○	·
	만성신부전요양비	·	·	○	·	·
	보장구구입비	·	·	○	·	·
	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대여료	·	·	○	·	·
간병비		○	·	○	·	·
특수식이 구입비		○	·	○	·	·

보건소 비치 작성 서류

○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
○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· 재산 신고서
○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환자용/가구원용)
○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구비서류

○ 진단서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, 최종진단, 질병코드 필요)
○ 통장 사본 1부
○ 건강보험증 사본
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1부
○ 부채증명서(해당자)
○ 임대차계약서(전 · 월세계약서) 1부
○ 자동차보험계약서(차량가액산정) 1부
○ 장애인 증명서, 장애정도결정서(해당자) 사본 1부

42 암환자 의료비 지원

• 〈총괄〉 보건소 보건의료과 의료협력팀 ☏351-8298
• 〈총괄〉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☏351-7021~35
• 〈총괄〉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 ☏351-7091~9

구 분	성인암		소아암	폐 암
	저소득층	의료급여		
지원대상	o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 o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– 직장가입자 : 1월 110,100원 이하 – 지역 가입자 : 1월 104,500원 이하	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만18세 이상의 암 환자	등록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의 자로 1. 의료급여수급자 2. 건강보험가입자 중 O 소득기준(천원/월) – 3인 가구 5,033 – 4인 가구 6,145 O 재산기준(천원) – 3인 가구 282,710 – 4인 가구 309,369	2021년 6월 30일 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자 1. 의료급여 수급자 2.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O 직장가입자 – 1월 110,100원 이하 O 지역 가입자 – 1월 104,500원 이하
지원암종	위암(C16), 유방암(C50) 자궁암(C53), 간암(C22) 대장암(C18–C20)	악성신생물(C00–C97),상피신생물(D00–D09), 통계청 한국표준질병, 사인별 분류 (D45–D47) 중 일부		원발성 폐암(C33~34)
지원금액	연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	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	O 백혈병: 최대 3천만원 O 기타 암종 : 최대 2천만원	O 건강보험가입자 – 연간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O 의료급여 수급자 –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
지원범위	O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(비급여 제외)	O 본인 부담금 (급여 · 비급여 구분 없음)	O 본인 부담금 (급여 · 비급여 구분 없음)	O 건강보험가입자 –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(비급여 제외) O 의료급여 수급자 – 본인 부담금 (급여 · 비급여 구분 없음)

암 환자 의료비 지원 공통사항 (원본)

O 진단서 : 진단일자, 상병명, 상병코드 최종 진단에 체크
O 약제비 영수증 : 반드시 처방전 첨부
O 진료비 영수증
O 진료비 납입확인서(증명서)
– 보험자 부담금, 급여 본인부담금, 비급여가 꼭 구분된 것
– 진료과 및 진료일자 표시
O 환자 통장 사본, 신분증
O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O 소견서, 의무기록사본 : 해당자에 한해 제출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: ☎1577-1000 건강보험료 및 암검진 일자 확인시